



질병관리청

# 보도참고자료

다시 도약하는 대한민국  
함께 잘사는 국민의 나라

|               |                     |       |                |                    |
|---------------|---------------------|-------|----------------|--------------------|
| 보도 일시         | 2022. 9. 3.(토) 배포즉시 | 배포 일시 | 2022. 9. 3.(토) |                    |
| 담당 부서<br><총괄> | 감염병위기대응국            | 책임자   | 과 장            | 이형민 (043-719-9100) |
|               | 신종감염병대응과            | 담당자   | 연구관            | 이수연 (043-719-9130) |
| 담당 부서         | 감염병위기대응국            | 책임자   | 과 장            | 정통령 (043-719-9050) |
|               | 위기대응총괄과             | 담당자   | 연구관            | 서승희 (043-719-9081) |

## 원숭이두창 국내 2번째 환자 확인

- 중앙방역대책본부(본부장 백경란)는 9월 1일 오후 전신증상 및 피부병변이 있는 원숭이두창 의사환자가 신고되어, 유전자 검사결과 최종 양성임을 확인하였다고 밝혔다.
  - 동 환자는 유럽 방문 후 지난 8월 18일 입국(당시 무증상)한 내국인으로, 8월 28일 발열, 두통, 어지러움을 시작으로, 8월 30일 국소 통증이 있어 서울의 한 병원을 방문하였으며,
  - 9월 1일 본인이 직접 보건소로 문의하여 인지되었고, 이후 서울시 역학조사관이 의사환자로 분류, 유전자검사 결과 양성임을 확인하여, 국내 2번째 확진 환자로 판정하였음을 밝혔다.
- 중앙방역대책본부는 금일 환자를 국립중앙의료원으로 이송하여 경과를 모니터링하고 접촉자 추가 파악을 위해 심층 역학조사를 수행하여,
  - 확진자의 전염 가능 기간 동안의 동선 파악과 이를 통해 확인되는 접촉자에 대해서는 노출 수준에 따라 위험도를 분류, 관리할 예정이다.
  - 현재 환자는 지정 치료기관에 입원 중이며 경중으로 전반적인 상태는 양호하다고 밝혔다.

□ 또한, 추가 환자 발생을 대비하여 신속 대응 체계를 마련하여 철저히 운영 중으로,

○ 전국 17개 보건환경연구원에 진단·검사 교육, 진단 시약배포 등을 통해 추가 확진자 발생시 신속히 진단할 수 있도록 원숭이두창 진단·검사 체계를 확대(7.11)하였다.

○ 아울러, 백신(JYNNEOS™) 5천명 분이 국내 도입\* 되어 필수의료진은 접종을 완료하였고, 치료제(테코미리마트) 504명 분을 확보하여 전국 지정 의료기관에 배포되어 즉시 사용 가능한 체계를 갖추었다.

\* 고위험 및 중위험 접촉자는 예방 및 증상 완화를 위해 3세대 백신 접종 실시

□ 질병관리청은, 원숭이두창은 현 방역대응 역량으로 충분히 관리가 가능한 질환\*으로, 조기발견과 지역사회 확산차단을 위해서 국민과 의료계의 협조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 WHO도 ‘원숭이두창은 제한된 감염경로로 관리가 가능한 질병’ 이라고 보도(2022.9.1.)

○ 원숭이두창 발생국가를 방문 또는 여행하는 국민들에게는 손씻기, 마스크 착용 등 개인위생수칙을 준수하고,

- 귀국 후 21일 이내 증상 발생 시 질병관리청 콜센터(1339)로 상담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 의료진에 대해서는 원숭이두창 의심환자를 진료 시 안전한 보호구를 착용하고, 환자 감시와 신고에 적극적인 협력을 당부하였다.

이 보도자료는 관련 감염병 발생 상황에 대한 정보를 신속 투명하게 공개하기 위한 것으로, 추가적인 역학조사 결과 등에 따라 수정 및 보완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붙임> 1. 확진 환자의 정보공개 지침  
 2. 원숭이두창 질병개요  
 3. 원숭이두창 행동수칙 안내문(국문)  
 4. 원숭이두창 행동수칙 안내문(영문)  
 5. 「감염병 보도준칙」 (2020.4.28.)

## 붙임 1 | 확진환자의 정보공개 지침

### □ 관련법령

####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약칭: 감염병예방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3. "감염병환자"란 감염병의 병원체가 인체에 침입하여 증상을 나타내는 사람으로서 제11조제6항의 진단 기준에 따른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의 진단이나 제16조의2에 따른 감염병병원체 확인기관의 실험실 검사를 통하여 확인된 사람을 말한다.

제6조(국민의 권리와 의무) ② 국민은 감염병 발생 상황, 감염병 예방 및 관리 등에 관한 정보와 대응방법을 알 권리가 있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신속하게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

제34조의2(감염병위기 시 정보공개) ①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국민의 건강에 위해가 되는 감염병 확산으로 인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조제2항에 따른 주의 이상의 위기경보가 발령되면 감염병 환자의 이동경로, 이동수단, 진료의료기관 및 접촉자 현황 등 국민들이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알아야 하는 정보를 정보통신망 게재 또는 보도자료 배포 등의 방법으로 신속히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성별, 나이, 그 밖에 감염병 예방과 관계없다고 판단되는 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는 제외하여야 한다.

#### 동법 시행령

제22조의2(감염병위기 시 공개 제외 정보)(12.30 시행) ① 법 제34조의2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란 다음 각 호의 정보를 말한다.

1. 성명

2. 읍·면·동 단위 이하의 거주지 주소

3. 그 밖에 질병관리청장이 감염병별 특성을 고려하여 감염병의 예방과 관계없다고 정하는 정보

② 질병관리청장은 제1항제3호에 따라 감염병의 예방과 관계없는 정보를 정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질병관리청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알려야 한다.

#### 동법 시행규칙

제27조의4(감염병위기 시 정보공개 범위 및 절차 등) ① 질병관리청장은 법 제34조의2제1항에 따라 정보를 공개하는 경우에는 감염병 위기상황, 감염병의 특성 및 역학적 필요성을 고려하여 공개하는 정보의 범위를 결정해야 한다.

#### ▶ 「개인정보 보호법」

제3조(개인정보 보호 원칙) ⑥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의 사생활 침해를 최소화하는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하여야 한다.

####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접근권) 장애인등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보장받기 위하여 장애인등이 아닌 사람들이 이용하는 시설과 설비를 동등하게 이용하고, 정보에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제6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의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등이 일상생활에서 안전하고 편리하게 시설과 설비를 이용하고,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각종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공개원칙

① 공개 대상 : 감염병환자

- ▶ **감염병환자**란 감염병 병원체가 인체에 침입하여 증상을 나타내는 사람으로서 진단을 통해 감염병이 확인된 사람(「감염병예방법」 제2조제13호)

② 공개 시점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조제2항에 따른 주의 이상의 위기경보 발령 시

③ 공개 기간 : 정보 확인 시~확진자가 마지막 접촉자와 접촉한 날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 날까지

- ▶ 공개 기간이 경과되면 장소 등 공개내용을 삭제함

④ 공개 범위

- ▶ 감염병 환자의 이동경로, 접촉자 현황 등의 정보공개는 **역학적 이유, 법령상의 제한, 확진자의 사생활 보호** 등의 다각적 측면을 고려하여 **감염병 예방에 필요한 정보에 한하여 공개함**

- (개인정보) 성명, 성별, 연령, 국적, 거주지 주소(읍·면·동 단위 이하) 및 직장명 정보 등은 공개하지 않음.  
단, 직장명은 직장에서 불특정 다수에게 전파시켰을 우려가 있는 경우 공개할 수 있음

- ▶ 감염병예방법 제34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22조의2에 근거하여 **성명, 성별, 나이, 거주지 주소(읍·면·동 단위 이하)** 정보 등은 제외하여야 함

- (시간) 코로나19는 증상 발생 2일 전부터 격리일까지 공개함

- ▶ 역학조사 결과 증상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는 검체채취일 2일 전부터 격리일까지를 대상으로 함

- (장소·이동수단) 확진자의 접촉자가 발생한 장소 및 이동수단을 공개함

- ▶ 장소 및 이동수단을 특정하지 않으면 다수에게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공간적, 시간적 정보를 최대한 특정하여 공개함
  - (건물) 특정 층, 특정 호실, 다중이용시설의 경우 특정 매장명, 특정 시간대 등
  - (상호) ▶ 상호명, 정확한 소재지 정보(도로명 주소 등)
  - (대중교통) 노선번호, 호선·호차, 탑승지 및 탑승일시, 하차지 및 하차일시

▶ 주의사항

- 상호명 및 소재지 등 공개 시 사실관계를 재차 확인\*하여 잘못된 정보가 공개되지 않도록 주의
- \* 시·도 및 시·군·구 등 관련 상호기관 간 재확인

## 붙임 2 원숭이두창 질병개요

- **(개요)** Monkeypox virus 감염에 의한 급성 발열 발진성 희귀질환, 1958년 코펜하겐 국립 혈청연구소가 사육 원숭이에서 첫 발견, 1970년 DR콩고에서 첫 인간 감염사례 이후 중앙 및 서부 아프리카의 농촌 열대우림지역에서 주로 발생, 대다수 사례는 DR콩고와 나이지리아에서 발생 보고, 두창과 유사하나 중증도는 낮음
- **(바이러스 특성)** *Poxviridae*과 *Orthopoxvirus* 중 하나로 이중 가닥 DNA바이러스임, DNA 바이러스 특성 상 변이 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보고됨, 바이러스의 독성 변화는 중앙아프리카에서 분리된 균주에서 관찰되었으며, 서아프리카의 균주보다 독성이 더 높음
- **(잠복기)** 5~21일(평균 6-13일)
- **(전파경로)** 인수공통감염병으로 **동물->사람, 사람->사람, 감염된 환경->사람으로 전파**
  - (피부병변 부산물) 주로 감염된 동물-사람의 혈액, 체액, 피부, 점막병변과의 직간접 접촉으로 전파
  - (매개물) 감염환자의 체액, 병변이 묻은 매개체(린넨, 의복 등) 접촉 통한 전파
  - (비말) 코, 구강, 인두, 점막, 폐포에 있는 감염비말에 의한 사람 간 직접 전파, 흔하지 않음
  - (공기) 바이러스가 포함된 미세 에어로졸을 통한 공기전파 가능하나, 흔하지 않음
- **(병원소)** 감염된 야생동물(원숭이, 다람쥐, 감비아 자이언트 쥐 등) 등
- **(치명률)** WHO에 따르면 최근 치명률은 3~6%으로 보고되고 있으며 아프리카 이외 2022년 발생 국가 중 사망자는 12명 있음(22.9.2 기준)
- **(임상증상)** 질병의 정도는 경증에서 중등도이지만 치명적일 수 있음
  - 발열, 두통, 림프절병증, 요통, 근육통, 근무력증 등을 시작으로 1-3일 후에 **얼굴 중심으로 발진증상**을 보이며, **원심형**으로 신체 다른 부위(특히 **사지**) **확산**, 구진성 발진은 수포, 농포 및 가피 등으로 진행되며 **특정 부위 발진은 대개 같은 진행 단계인 것과 림프절 종대가 특징**, 증상은 약 2-4주 지속
- ☞ **임상증상이 비슷한 수두, 홍역, 옴, 매독 등과 감별 진단 중요**
- **(치료)** 대부분 자연회복, **대증치료**(국내 상용화된 특이치료제는 없음), 필요시 항바이러스제\* 치료
  - \* 17개 시도 지정병원에 배포된 테코비리마트 활용 가능
- **(예방)** 두창바이러스와 구조가 비슷하여 두창백신으로 교차면역반응 유도, 약 85%의 예방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음

**붙임 3 원숭이두창 행동수칙 안내문(국문)**

2022. 7. 12.



# 원숭이두창

## 예방 및 행동 수칙 대국민용



### 원숭이두창 예방수칙

- ✔ **손 씻기 등 개인적인 위생 수칙 준수**  
\* 의심증상자 접촉 후 비누와 물 사용 손씻기 또는 알코올 성분 손 소독제 사용
- ✔ **오염된 손으로 눈, 코, 입 등 점막 부위 접촉 삼가**
- ✔ **원숭이두창 의심증상자 피부병변(발진이나 딱지 등) 접촉 삼가**
- ✔ **원숭이두창 의심증상자 사용 물품(침구류, 수건, 의복, 세면대 등)접촉 삼가**
- ✔ **원숭이두창 의심증상자와 부득이한 접촉 시 적절한 개인보호구 착용**
- ✔ **아프거나 죽은 동물과의 직접 접촉 및 사용 물품 주의**
- ✔ **아프리카 수입 야생동물 및 반려동물 접촉 주의**



### 원숭이두창 의심증상(발진 등) 발생 시 행동요령

- ✔ **실거주지 관할 보건소로 즉시 신고하여 방역 당국의 조치사항 안내에 따름**
- ✔ **원숭이두창 평가 전까지 동거인을 비롯한 주위사람들과의 접촉 삼가**  
\* 침구, 식기, 컵 등 물품을 별도로 사용하고 가능하면 생활공간을 분리
- ✔ **철저한 손위생 및 가족, 동거인 등 보호하기 위해 개인보호구 사용**  
\* 피부병변을 긴 소매 및 바지 등으로 감싸 노출 최소화, 마스크 착용, 일회용 장갑 등
- ✔ **의심증상자의 쓰레기 및 침구는 별도로 분리하여 관리**  
\* 확진되면 쓰레기는 폐기물로 별도 분리 배출하고 침구도 별도 세탁 시행
- ✔ **애완동물을 포함한 기타 동물과의 접촉 삼가**

2022. 7. 12.



# 원숭이두창 예방 및 행동 수칙



발생지역 방문자용



## 원숭이두창 발생지역 방문 시 주의사항

- ✓ 방문 전, 원숭이두창 풍토병 지역 및 발생지역 확인
- ✓ 설취류(다람쥐 등), 영장류 등 접촉 삼가
- ✓ 동물사체 및 야생고기를 다루거나 먹지 않기
- ✓ 원숭이두창 (의심)환자와 접촉 삼가
  - 원숭이두창 의심 증상(발진 등)을 가진 사람과 접촉 삼가
  - 원숭이두창 의심 증상(발진 등)을 가진 사람의 물건 등과 접촉 삼가



## 원숭이두창 발생지역 방문 후 주의사항

- ✓ 귀국 후 검역 시 검역관에게 건강상태질문서 제출
- ✓ 귀국 후 21일간 발열 및 기타 관련 증상 자가 모니터링
- ✓ 원숭이두창 의심증상이 있을 경우, 실거주지 관할 보건소로 상담 문의



## 원숭이두창 의심증상(발진 등) 발생 시 행동요령

- ✓ 실거주지 관할 보건소로 즉시 신고하여 방역 당국의 조치사항 안내에 따름
- ✓ 원숭이두창 평가 전까지 동거인을 비롯한 주위사람들과의 접촉 삼가
  - \* 침구, 식기, 컵 등 물품을 별도로 사용하고 가능하면 생활공간을 분리
- ✓ 철저한 손위생 및 가족, 동거인 등 보호하기 위해 개인보호구 사용
  - \* 피부병변을 긴 소매 및 바지 등으로 감싸 노출 최소화, 마스크 착용, 일회용 장갑 등
- ✓ 의심증상자의 쓰레기 및 침구는 별도로 분리하여 관리
  - \* 확진되면 쓰레기는 폐기물로 별도 분리 배출하고 침구도 별도 세탁 시행
- ✓ 애완동물을 포함한 기타 동물과의 접촉 삼가

**붙임 4 원숭이두창 행동수칙 안내문(영문)**

2022. 8. 24.

 Korea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Agency

# Monkeypox Prevention Guidelines




## Monkeypox prevention steps

- ✓ **Practice good personal hygiene, including washing your hands**  
\* Wash your hands with soap and water regularly or use an alcohol-based hand sanitizer after contact with a person with suspected monkeypox
- ✓ **Keep contaminated hands away from the mucous membranes of the eyes, nose and mouth**
- ✓ **Avoid direct contact with skin lesions(incl. a rash or scabs) on a person with suspected monkeypox**
- ✓ **Avoid contact with objects and materials(incl. bedding, towels, clothing, or a bathroom sink) that a person with suspected monkeypox has used**
- ✓ **Wear appropriate personal protective equipment when you unavoidably have come in contact with a person with suspected monkeypox**
- ✓ **Beware of direct contact with sick or dead animals and items used**
- ✓ **Do not go near wild or companion animals imported from west and central Africa**



## What to do if you develop suspected symptoms of monkeypox

- ✓ **Immediately report suspected symptoms to a public health center and follow advice**
- ✓ **Avoid contact with people including those who you live with until you've been told what to do**  
\* Do not share towels, cups or bedding, and isolate at home if possible
- ✓ **Wash hands frequently with soap and water and use personal protective equipment to limit spread to family members and people you live with**  
\* Wear long sleeves and pants to cover skin lesions, a well-fitting mask and disposable gloves, etc.
- ✓ **Separately manage disposal of personal waste and bedding**  
\* If you are confirmed, personal waste should be kept separate from other waste and discarded in disposable rubbish bags  
You should launder your clothes and bedding separately from those of other members of the household
- ✓ **Avoid contact with animals including companion ones**

Please call the **KDCA call center(at 1339)** for advice if you develop suspected symptoms of monkeypox, such as fever or a rash

2022. 8. 24.



# Monkeypox Prevention Guidelines

for travelers to countries/areas affected by monkeypox



## Precautions when traveling to countries/areas affected by monkeypox

- ✓ Learn about monkeypox before traveling to the endemic area
- ✓ Avoid contact with rodents(such as giant-pouched rats or prairie dogs) or non-human primates
- ✓ Avoid handling dead animals and eating undercooked meat sourced from wild animals
- ✓ Avoid contact with a(suspected) monkeypox patient
  - Avoid contact with a person with suspected symptoms(incl. a rash)
  - Avoid contact with objects and materials(incl. bedding, towels, clothing, or a bathroom sink) that a person with suspected symptoms has used



## What to do after returning from countries/areas affected by monkeypox

- ✓ On arrival, fill out and submit the health questionnaire to a Korean airport quarantine station officer
- ✓ Self-monitor for the development of symptoms, including fever, for 21 days from the date of arrival
- ✓ Call a public health center for a consultation if you develop suspected symptoms



## What to do if you develop suspected symptoms of monkeypox

- ✓ Immediately report suspected symptoms to a public health center and follow advice
- ✓ Avoid contact with people including those who you live with until you've been told what to do
  - \* Do not share towels, cups or bedding, and isolate at home if possible
- ✓ Wash hands frequently with soap and water and use personal protective equipment to limit spread to family members and people you live with
  - \* Wear long sleeves and pants to cover skin lesions, a well-fitting mask and disposable gloves, etc.
- ✓ Separately manage disposal of personal waste and bedding
  - \* If you are confirmed, personal waste should be kept separate from other waste and discarded in disposable rubbish bags  
You should launder your clothes and bedding separately from those of other members of the household
- ✓ Avoid contact with animals including companion ones

- Fill out and submit the health questionnaire when returning  
If you have developed any symptoms, notify a Korean airport quarantine station officer about your symptoms
- If you have develop suspected symptoms of monkeypox, incl. fever or a rash within 21 days after returning from countries/areas affected by monkeypox, call the **KDCA call center (at 1339)** for advice
- If you visit a healthcare provider due to other symptoms, be sure to inform the provider of your travel history

## 붙임 5 | 감염병 보도준칙 (2020.4.28.)

- 다음은 2020년 4월 28일, 한국기자협회·방송기자연합회·한국과학기자협회에서 제정한 「감염병 보도준칙」의 주요 내용으로, 감염병 관련 보도 시에 참고해주시길 바랍니다.

### 감염병 보도준칙

#### ■ 전문

감염병이 발생했을 때 정확하고 신속한 정보는 국민의 생명 보호와 안전에 직결되는 만큼 무엇보다 정확한 사실에 근거해 보도해야 한다.

추측성 기사나 과장된 기사는 국민들에게 혼란을 야기한다는 점을 명심하고, 감염병을 퇴치하고 피해 확산을 막는데 우리 언론인도 다함께 노력한다. 감염병 관련 기사를 작성할 때는 반드시 전문가의 자문을 구한 뒤 작성하도록 하고, 과도한 보도 경쟁으로 피해자들의 사생활이 침해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한다.

우리 언론인은 감염병 관련 기사가 우리 사회에 미치는 영향력과 사회적 과장이 크다는 점을 이해하고 다음과 같이 원칙을 세워 지켜나가고자 한다.

#### ■ 기본 원칙

##### 1. 감염병 보도의 기본 내용

- 가. 감염병 보도는 해당 병에 취약한 집단을 알려주고, 예방법 및 행동수칙을 우선적, 반복적으로 제공한다.
- 나. 감염병 치료에 필요한 의약품이나 장비 등을 갖춘 의료기관, 보건소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 다. 감염병 관련 의학적 용어는 일반인들이 이해하기 쉽게 전달한다.

##### 2. 신종 감염병의 보도

- 가. 발생 원인이나 감염경로 등이 불확실한 신종 감염병의 보도는 현재 의학적으로 밝혀진 것과 밝혀지지 않은 것을 명확하게 구분하여 전달한다.
- 나. 현재의 불확실한 상황에 대해 의과학 분야 전문가의 의견을 제시하며, 추측, 과장 보도를 하지 않는다.
- 다. 감염병 발생 최초 보도 시 질병관리청을 포함한 보건당국에 사실 여부를 확인하고 보도하며, 정보원 명기를 원칙으로 한다.

##### 3. 감염 가능성에 대한 보도

- 가. 감염 가능성은 전문가의 의견이나 연구결과 등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보도한다.
- 나. 감염병의 발생률, 증가율, 치명률 등 백분율(%) 보도 시 실제 수치(건, 명)를 함께 전달한다.
- 다. 감염의 규모를 보도할 때는 지역, 기간, 단위 등을 정확히 전달하고 환자수, 의심환자수, 병원체보유자수(감염인수), 접촉자수 등을 구분해 보도한다.

##### 4. 감염병 연구 결과 보도

- 가. 감염병의 새로운 연구결과 보도 시 학술지 발행기관이나 발표한 연구자의 관점이 연구기관, 의료계, 제약 회사의 특정 이익과 관련이 있는지, 정부의 입장을 일방적으로 지지하는지 확인한다.
- 나. 감염병 관련 연구결과가 전체 연구중의 중간 단계인지, 최종 연구결과물인지 여부를 확인한 후 보도한다. (예: 임상시험 중인 약인지, 임상시험이 끝나고 시판 승인을 받은 약인지 구분해 보도)

##### 5. 감염인에 대한 취재·보도

- 가. 불확실한 감염병의 경우, 기자를 매개로 한 전파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감염인을 직접 대면 취재하지 않는다.
- 나. 감염인은 취재만으로도 차별 및 낙인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감염인과 가족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사생활을 존중한다.
- 다. 감염인에 대한 사진이나 영상을 취재·보도에 활용할 경우 본인 동의없이 사용하지 않는다.

##### 6. 의료기관 내 감염 보도

의료기관 내 감염 확산에 대한 취재·보도 시, 치료환경에 대한 불안감 및 혼란을 고려해 원인과 현장 상황에 대해 감염전문의가의 자문과 확인이 필요하다.

##### 7. 감염병 보도 시 주의해야 할 표현

- 가. 기사 제목에 패닉, 대혼란, 대란, 공포, 창궐 등 과장된 표현 사용  
 “국내 첫 환자 발생한 메르스 ‘치사율 40%’ … 중동의 공포 465명 사망!”  
 “‘해외여행 예약 0건’…여행·호텔업계 코로나19 이어 ‘코리아 포비아’ 악몽”



나. 기사 본문에 자극적인 수식어의 사용

“지난 2013년 한국 사회를 혼란에 빠트렸던 ‘살인진드기’ 공포가 또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온 나라에 사상 최악의 전염병 대재앙을 몰고 온 메르스(중동호흡기질환) 의심환자가 또 발생했다.”  
 “‘코로나19’에 박살난 지역경제... ‘공기업 역할해라’”

다. 오인이 우려되는 다른 감염병과의 비교

“야생진드기 에이즈보다 무섭네...물리면 사망위험 커”  
 “전파력 메르스 ‘1000배’...홍콩독감 유입 땀 대재앙”

■ 권고 사항

1. 감염병 발생시, 각 언론사는 특별취재팀을 구성해 감염병에 대한 충분한 사전 교육을 받지 않은 기자들이 무분별하게 현장에 접근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
2. 감염병 발생시, 보건당국은 언론인을 포함한 특별대책반(T/F)를 구성해, 관련 정보가 국민들에게 신속하고 정확하게 전달되도록 해야 하고, 위험 지역 접근취재 시 공동취재단을 구성해 기자들의 안전 및 방역에 대비해야 한다.

■ 별첨

**<참고1> 감염병 정보공개 관련 법령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약칭: 감염병예방법)**

제34조의2(감염병위기 시 정보공개)

- ①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국민의 건강에 위해가 되는 감염병 확산으로 인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조제2항에 따른 주의 이상의 위기경보가 발령되면 감염병 환자의 이동경로, 이동수단, 진료의료기관 및 접촉자 현황 등 국민들이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알아야 하는 정보를 정보통신망 게재 또는 보도자료 배포 등의 방법으로 신속히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성별, 나이, 그 밖에 감염병 예방과 관계없다고 판단되는 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는 제외하여야 한다. <개정 2020. 3. 4., 2020. 8. 11., 2020. 9. 29.>
  - ②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공개한 정보가 그 공개목적의 달성 등으로 공개될 필요가 없어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공개된 정보를 삭제하여야 한다. <신설 2020. 9. 29.>
  - ③ 누구든지 제1항에 따라 공개된 사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서면이나 말로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신설 2020. 3. 4., 2020. 8. 11., 2020. 9. 29.>
    1. 공개된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
    2. 공개된 사항에 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
  - ④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신청한 이의가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공개된 정보의 정정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20. 3. 4., 2020. 8. 11., 2020. 9. 29.>
  -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정보공개 및 삭제와 이의신청의 범위,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0. 3. 4., 2020. 9. 29.>
- [본조신설 2015. 7. 6.]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약칭: 감염병예방법 시행규칙)**

제27조의4(감염병위기 시 정보공개 범위 및 절차 등)

- ① 질병관리청장은 법 제34조의2제1항에 따라 정보를 공개하는 경우에는 감염병 위기상황, 감염병의 특성 및 역학적 필요성을 고려하여 공개하는 정보의 범위를 결정해야 한다. <개정 2020. 6. 4., 2020. 9. 11.>
  - ② 법 제34조의2제2항에 따라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18호의5서식의 정보공개 이의신청서를 질병관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0. 6. 4., 2020. 9. 11.>
- [본조신설 2016. 1. 7.]  
 [제27조의3에서 이동 <2020. 6. 4.>]

부 칙 <보건복지부령 제754호, 2020. 10. 7.>

이 규칙은 2020년 10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1조제1항, 제42조의3제2항 및 별지 제30호의4서식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출처: 한국기자협회([http://www.journalist.or.kr/news/section4.html?p\\_num=17](http://www.journalist.or.kr/news/section4.html?p_num=17))

**<참고2> 감염병 보도시 기본 항목**

- 질병정보 (국내외 발생현황, 병원체, 감염경로, 잠복기, 증상, 진단, 치료, 환자관리, 예방수칙)
- 의심 및 확진환자 현황 (신고건수, 의심환자 건수, 확진환자 건수)
- 확진 환자 관련 (환자의 이동경로, 이동수단, 진료의료기관, 접촉자 현황 등)
- 국민행동요령 및 정부의 대책, 감염병 확산방지 및 피해최소화 위한 지역사회와 국민참여 등

■ 부 칙

이 준칙은 2020년 4월 28일부터 시행하고, 이 준칙을 개정할 경우에는 제정 과정에 참여한 3개 언론 단체 및 이 준칙에 동의한 언론단체로 개정위원회를 만들어 개정한다.

2020년 4월 28일  
 한국기자협회, 방송기자연합회, 한국과학기자협회

